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9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성흠제, 송정빈,  
양민규, 이성배, 임종국,  
전석기, 최웅식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16. 12. 2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개정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1. ~ 6. (생략)</p> <p><u>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8.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부칙신설&gt;</p>	<p>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 ----- ----- ----- ----- ----- ----- ----- ----- ----- -----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8. ~ 10.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u></p>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문서번호

2021033100000012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창원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이수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3.31.

회신일 : 2021.04.01.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7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설되는 포상금 지급대상 사유의 발생건수 등 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신고포상금액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200,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3조제1항제7호(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따라,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발생건수 등의 현황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이수아

☎ 02-2180-7952

e-mail : sua8873@seoul.go.kr